

新年特輯

工業所有權制度 및 관련 醫藥·化學物質등의 發明, 特許

工業所有權制度 및 관련法律은 새해를 맞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난 해 제131회 정기국회에서 特許法 중 改正法律案을 비롯, 實用新案法 중 改正法律案·意匠法 중 改正法律案·商標法 중 改正法律案·不正競爭防止法 改正法律案·特許管理特別會計法案이 상정, 구립 17·18일 本會議에서 통과된데 이어 31일 公布되어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 및 관련法律은 커다란 變革을 가져왔다.

이번에 改正된 特許法 중 改正法律은 物質特許制度를 인정하는 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의 保護範圍의 확대와 特許發明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通常實施權制度의 개선, 出願中인 發明을 신속히 權利化하고 拒絕査定에 不服하는 抗告審判을

원활하게 處理하기 위하여 審查前置制度의 導入 등이 그 主要內容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特許法에서 不特許事由로 규정하고 있는 醫藥 또는 藥製方法의 發明·化學方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化學物質의 용도에 관한 發明이 特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改正되었다.

그리고 이 改正案은 現行 12년으로 되어 있는 特許權의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여 15년으로 하고 당초 立法豫告時 出願日로 부터 18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 醫藥品등과 같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와 그 製造허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特許權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特許權의 존속기

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特許權 등의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 중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實用新案法 중 改正法律과 意匠法 중 改正法律은 앞으로 實用新案이나 意匠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기한(현행 30일 이내)에 관계없이 제출하면 新規性이 인정되도록 改正되었다.

또 商標法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따라 登錄商標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商標權者의 商品과 使用權者的 商品의 品質의 동일성보장규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登錄商標가 성실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使用權

法律 第3891號

特許法 중 改正法律案

特許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第3號 및 第5號를 刪除하고, 同條 第4號를 同條第2號로, 同條第6號를 同條第3號로 한다.

第7條의 題目『(발명의 신규성의 의제)』를 『(發明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同條第2項중『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를『제1項第1號·第3號 내지 第5號의 规定의適用을 받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45條第3項중『그 출원한 날 이전에』를『그 出題된 날 전에』로,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를『그 特許發明이 出題된 날 전에 出題된 他人의 登錄意匠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第46條의 題目중『미치지 않는』을『미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同

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第4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2 이상의 醫藥(사람의 질병의 診斷·治療·輕減·處置 또는 預防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製造되는 醫藥의 發明 또는 2 이상의 醫藥을 혼합하여 醫藥을

法律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對象에 포함...「特許管理 特別會計法」도 制定

者が 商標権者의 登錄商標를 불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商標権者 의 商品의 品質 또는 出處를 오인, 혼동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그 商標登錄 또는 使用權登錄를 取消할 수 있도록 改正했다.

그리고 不正競爭防止法 改正法 律은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부정 경쟁행위의 防止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으며, 벌금액의 상향조정 등으로 건전한 경쟁원리에 의한 거래 질서 유지와 국제간의 분쟁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재고하도록 改正했다.

特許管理特別會計法은 特許管理特別會計는 特許廳長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特許行政關聯收入, 전년도 이월금, 다른 회계로

製造하는 방법의 發明에 관한 特許權의 效力은 藥事法에 의한 調劑行爲와 그 調劑에 의한 醫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第49條第1項중 『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意匠權』으로, 『원설 용신안권자·원의장권자』를 『原意匠權者』로 하며, 同條第2項중 『원설용신안권 또는 원의장권』을 『原意匠權』으로 한다.

第5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通常實施權 設定의 認定)
①特許發明이 다음 각號의 1에

부터의 轉入金 및 一時借入金을 세입으로 하고, 特許行政관련경비,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를 세출로 하기로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外務委員會에서 의결, 國會분회의의 동의를 받은 「製法特許出願의 物質特許保護提供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美合衆國정부간의 書翰交換」은 개정 特許法의 발효일 현재 계류중인 미국민의 製法特許출원에 대하여 物質特許 청구도 포함되도록 보정을 허용토록 했다.

그런데 特許法 및 商標法中 法律改正案은 지난 5月 1日 입법에 고되었으며 정부의 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國會에 제출되어 구립 초에 國회상공위원회에서 商標法·實用新案法·意匠法中 改正法律案이 통과되었다.

또 구립 12日 열린 상공위원회에서는 特許法中 改正法律案·不正競爭防止法 改正法律案·特許管理特別會計法案이 통과되었다.

이들 改·制定 法律案은 구립 15日 國會法司委員會에서 통과되었으며 구립 17일과 18일 國會本會議에서 의결되어 이를 구립 31일에 大統領이 公布했다.

한편 이번에 制·改正된 法律 중 不正競爭防止法 改正法律은 87年 1月 1日부터 실시되며,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中 改正法律은 87年 7月 1日부터, 特許管理特別會計法案은 88年 1月 1일부터, 商標法改正法은 公布日로 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改正 公布된 工業所有權制度와 관련法律 그리고 새로 制定된 特許管理特別會計法의 전문을 紹介한다.

〈編輯者 註〉

해당하는 경우에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그 特許發明의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의 許諾에 관하여 協議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日로부터 4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特許發明이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以上 國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特許發明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以上 國내에서 상당한 營業的 規模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適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需要 또는 輸出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特許權者가 實施權의 許諾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產業이나 國家 또는 國內居住者的事業에 損害를 가하였을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廳長에게 通常實施權을 設定하는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請求할 수 있다.

第51條의2 내지 第51條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1條의2 (答辯書의 제출) 特許廳長은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請求가 있은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그 請求에 관하여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기타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송달하고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51條의3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意見聽取) 特許廳長은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請求에 대하여 裁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51條의4 (裁定의 方式) ①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請求에 대한 裁定은 書面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通常實施權을 設定하는 裁定을 할 때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通常實施權의 범위

2. 對價와 그 支給方法 및 時期

第51條의5 (裁定書謄本의 送達) ①

特許廳長은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請求에 대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裁定書謄本을 送達하여야 한다.

② 當事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設定하는 裁定書謄本이 送達된 때에는 裁定書에 명시된 바에 따라 當事者 사이에 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第51條의6 (對價의 供託) 第51條의

4第2項第2號의 對價를 支給하여 야할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1. 그 對價를 받을 者가 그 受領을 거부하거나 受領할 수 없을 때
2. 그 對價에 대하여 第1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이 제기된 때
3. 당해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을 때. 다만, 質權의 승락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條의7 (裁定의 失效) 通常實施權을 設定하는 裁定을 받은 者가 第51條의4 第2項第2號의 對價(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 支給할 때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裁定은 效力を 잃는다.

第51條의8 (裁定의 取消) ① 特許廳長은 通常實施權을 設定하는 裁定을 받은 者가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그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② 第51條의2·第51條의3·第51條의4第1項 및 第51條의5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은 때에는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한다.

第51條의9 (特許權의 取消) ① 特許廳長은 第51條第1項第1號의 사유로 인한 通常實施權을 設定하는 裁定이 있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2年이상 그 特許發明이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그 特許權을 取消할 수 있다.

② 第51條의2·第51條의3·第51條의4第1項 및 第51條의5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2條 및 第53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特許權의 取消·제한 및 收用과 通常實施權의 設定을 위한 裁定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를 둔다.

②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53條 (特許權의 存續期間) ①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出願公告가 있은 경우에는 그 公告가 있은 날로부터 出願公告가 없는 경우에는 特許權設定의 登錄이 있은 날로부터 15年으로 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여야 하고, 그 許可 또는 登錄을 위하여 필요한 活性·安全性등의 시험에 長期間이 所要되는 경우에는 5年의期間내에서 당해 特許權의 存續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存續期間을 연장할 수 있는 特許發明의 대상·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④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를 許與하는 경우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가 許與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5年의期間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한 特許出願의 出願公告가 있은 날의翌日로부터

起算한다.

第5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9條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 ①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가 第4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他人의 實施許諾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特許發明의 實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許與의 審判을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이 出願된 날 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 또는 登錄實用新案에 비하여 상당한 技術上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訸與를 받는 者의 特許發明의 實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相對方이 實施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相對方의 實施許諾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訸諾을 받아 實시하고자 하는 相對方의 特許發明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을請求할 수 있다.

第81條 및 第88條를 削除한다.

第91條의 領題『(가보호의 권리)』를 『(臨時保護의 權利)』로 한다.

第1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6條 (審判規定의 準用) 第63條
· 第99條 내지 第117條 · 第119條
내지 第124條의 規定은 抗告審判에 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06條중 『3人』은 『3人 또는 5人』으로 보며, 第109條 및 第117條중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當事者 · 參加人 또는 特許異議申請人』으로 본다. 다만, 第126條의2의 規定에 해당되는拒

絕查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事件에 대한 抗告審判官의 지정은 第126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에 한한다.

第126條의 2 내지 第126條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6條의2 (審查前置主義) 特許廳長은 第1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定에不服하는 抗告審判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그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請求에 관련된 特許出願書에 첨부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대한 补正이 있는 때에는 抗告審判을 하기 전에 審查官에게 그 請求를 다시 審查하게 하여야 한다.

第126條의3 (準用規定) ① 第80條第2項 · 第96條 및 第107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第1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審查에 이를 準用한다.

② 第10條의2 및 第82條第2項의 規定은 抗告審判請求에 관한 審定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第1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審查에 이를 準用한다.

③ 第10條의2 · 第83條 · 第84條 내지 第86條 · 第90條 · 第91條 · 第99條 · 第149條 및 第150條의 規定은 抗告審判請求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第1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審查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第83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126條의 4 (審查前置의 終結) ① 審查官은 第126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審查의 결과 特許查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不服抗告審判이請求된 당초의 拒絕查定을取消하여야 한다.

② 審查官은 第1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審查의 결과 特許查定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決定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審查官은 第1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審查의 결과 特許查定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絕查定을 하지 아니하고 그 審查結果를 特許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57條의11第1項중 『出願書 · 明細書 · 請求의 범위 및 圖面의 國語에 의한 韓譯文(다면, 圖面은 韓譯文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을 『明細書 · 請求의 범위 및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國語에 의한 韓譯文을』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의 期間내에 出願書 · 明細書』를 第1項의 期間내에 明細書』로 하며, 同條 第4項중 『明細書 · 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으로서』를 『明細書 · 請求의 범위 및 圖面으로서』로, 『明細書 · 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明細書 · 請求의 범위 및 圖面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57條의22 및 第157條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7條의 22 (發明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發明에 대하여 第7條第1項第1號 · 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類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第7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工部장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157條의 23 (在外者の 特許管理人의 特例) ① 在外者인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第157條의11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 또는 基準日까지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管理人에 의하

지 아니하고 出願翻譯文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管
理人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차를
행할 수 있는 者중 第157條의 1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翻譯文
을 제출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정
하는 期間내에 特許管理人을 選
任하여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特許管理人の 選任申告가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第158條第1項중 『1,000萬원以下의』
를 『2,000萬원 이하의』로 하고,
同項중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
다.

2. 第9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
時保護의 權利를 침해한 者. 다만,
당해 特許權設定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
일부터 施行한다.

②(特許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特許出願에 대한
審查 및 拒絕査定에 대한 不服抗告
審判,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은 종
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特許權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
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特許權
과 이 法 施行전에 特許出願되어
設定되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종
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特許의 強制實施등에 관한 經過
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特許
의 不實施의 경우의 強制實施 또는
特許取消나 特許權의 濫用의 경우
의 強制實施 또는 特許取消의 處分
이나 이에 관한 訴訟은 종전의 規
定에 의한다.

法律第3893號

实用新案法 改正法律案

实用新案法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实用新案法』을 『实用新案法』
으로 한다.

第6條의 題目 『(고안의 신규성의 의
제)』를 『(考案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同
條第2項중 『제1항의 규정의 적용
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項의 1
號・第3號 내지 第5號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11條第3項중 『그 출원을 한날 이
전』을 『그 出願된 날 전』으로,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을
『그 登錄实用新案이 그 出願된 날
전에 出願된 他人的 登錄意匠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특허권 또는 의장
권』을 『意匠權』으로, 『원특허권
자・원의장권자』를 『原意匠權者』
로 하고, 同條第2項중 『원특허권
또는 원의장권』을 『原意匠權』으
로 한다.

第15條 및 第16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 (实用新案權의 存續期間) ①
实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出願公
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出願公告가 없는
경우에는 登錄이 있는 날로부터
10年으로 한다.

② 第29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登錄을 許與하는 경
우 및 第29條에서 準用하는 特許
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당
한權利者에게 登錄이 許與된 경
우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0年
의 期間은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
는 權利를 冒認한 者가 한 實用
新案登錄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
의 다음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16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 實用新案權者 · 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가 第11條第3
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 許
與를 받고자 하는 情况에 그 他人
이 정당한 이유없이 實시를 許
與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實
施許與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
기의 登錄實用新案의 實시에 필요
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許與
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
는 경우에는 그 登錄實用新案이
出願된 날 전에 出願된 他人的
登錄實用新案 또는 特許發明에
비하여 상당한 技術上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通常實施
權의 許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
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
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登錄實用
新案의 實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 그 相對方이 實施를 許與하지
아니하거나 相對方의 實施許與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通常實施權
의 許與를 받아 實시하려고 하는
相對方의 登錄實用新案의 범위안
에서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의 3第1項중 『出願書・明細書
· 請求의 범위 및 圖面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다면, 圖面은 翻譯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 『明細
書・請求의 범위 및 圖面(圖面中
說明部分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으로 하
고, 同條第2項중 『出願書・明細
書 및 請求의 범위』를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로 하며, 同條第4項
중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 記載된 사항』을 『明細書・

請求의 범위 및 圖面으로,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記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明細書·請求의 범위 및 圖面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29條의 10종『第157條의 15 및 第157條의 18의 規定』을『第157條의 15 · 第157條의 18 · 第157條의 22 및 第條157의 23의 規定』으로 한다.

第30條第1項중『1,000萬원 이하의』를『2,000萬원 이하의』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29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9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保護의 權利를 침해 한 者. 다만, 당해 實用新案權設定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實用新案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審查 및 拒絕查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實用新案權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實用新案權과 이 法 施行전에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되어 設定되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登錄實用新案의 強制實施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登錄實用新案의 不實施의 경우의 強制實施 또는 登錄取消나 實用新案權의 濫用의 경우의 強制實施 또는 實用新案登錄取消의 處分이나 이에 관한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法律第3894號

의장법증改正法律案

의장법증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의장법』을『意匠法』으로 한다.

第7條의 項目『(의장의 신규성의 의제)』를『(意匠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同條第2項중『제1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를『제1項第1號 · 第3號 내지 第5號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19條第2項중『그 의장등록출원한 날 이전』을『그 意匠登錄出願한 날 전』으로,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를『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登錄意匠이 出願한 날 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 ·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과 저촉되는 경우에』으로 한다.

第21條第3項중『의장등록을 하여 하는 경우에』를『意匠登錄이 許與된 경우에』로 한다.

第26條第1項중『의장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의 준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의장권자 · 원특허권자』를『特許權 ·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 만료 후에 있어서 原特許權者』로 하고, 同條第2項중『제1항의 원의장권 · 원특허권』을『第1項의 原特許權』으로 한다.

第50條第1項중『통상실시권 하여심판』을『자기의 登錄意匠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登錄意匠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相對方이 실시를 許與하지 않거나 그 相對方의 實施許與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相對方의 登錄意匠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을請求할 수 있다.

니하거나 그 相對方의 實施許與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相對方의 登錄意匠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을請求할 수 있다.

第57條第1項중『1,000萬원 이하』를『2,000萬원 이하』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意匠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審查 및 拒絕查定에 대한不服抗告審判,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登錄意匠의 強制實施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登錄意匠의 不實施의 경우의 強制實施 또는 意匠登錄取消나 意匠權의 濫用의 경우의 強制實施 또는 意匠登錄取消의 處分이나 이에 관한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法律第3892號

상표법증改正法律案

상표법증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상표법』을『商標法』으로 한다.

第5條第1項중『통상사용권』을『使用權』으로 한다.

第20條第2項第2號중『通常使用權者』를『使用權者』로 한다.

第24條중『통상사용권자』를『使用權者』로 한다.

第2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 (使用權의 設定) ①商標權者가 자기의 登錄商標를 他人에게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使用權의 設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標原簿에 登

錄하여야 한다. 다만, 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 각共有者는 다른
共有者の同意 없이 그商標權에
대하여 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②團體標章 또는 業務標章에 대
하여는 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使用權
設定의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商標權者와 登錄商標를 사용할
者가 共同으로 使用權設定登錄申
請書를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0條를 削除한다.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 (使用權의 效力等) ①使用
權은 設定의 登錄에 의하여 效力
이 발생한다.
②使用權者는 登錄의 범위 안에서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使用權者는 그商品에 자기의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使用權者의 商標使用은 商標權
者에 의한 登錄商標의 사용으로
보고 第35條 내지 第37條와 第45
條第1項第1號 및 第3項을 適用한
다.

第32條의 題目『(통상사용권의 이
전)』을『(使用權의 移轉)』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使用權은 相續 기타 一般承繼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
의 同意 없이 移轉할 수 없다.

第33條第1項 但書中『통상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통상사용권자』
를『使用權을 設定한 때에는 그
使用權者』로 한다.

第43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商標登錄의 取消審
判·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으로
한다.

1. 第45條 및 第45條의 2의 规定

에 의한 商標登錄의 取消 및 使用
權登錄의 取消

第44條第2項중『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第4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6號·第7號 및 第45條第2項과
第45條의 2』로 하고『동호에 규정
한』을『그審判請求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第45條第1項第1號 但書를 刪除하고,
同條第2項 내지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使用權者가 指定商品에 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함으로써商品
의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商品
의 出處를 혼동하게 할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그商標登錄을 取
消하여야 한다. 다만, 商標權者
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第1項第3號의 適用에 있어서
商標權者가 商標原簿에 登錄된
國內의 자기나 代理人의 住所 또
는 營業所의 行政區域인 市·郡
(서울特別市의 區)에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없는 者로서
그 代理人의 登錄이 없는 경우에
는 特許廳의 所在地에서) 그의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商品에 대하여
그商標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6號
·第7號 및 第2項에 해당하는 것
을 이유로 하는 審判請求를 한 날
후에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
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第27條第2項의 规定에 위반되
었음을 이유로 그商標登錄을 取
消함에 있어서는 聯合關係에 있
는 聯合商標 전부가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第45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5條의 2 (使用權登錄의 取消) ①

使用權者가 第45條第2項의 规定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審
判에 의하여 그 使用權登錄을 取
消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规定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審判請求를 한 날 후
에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
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7條第1項중『통상사용권자』를
『使用權者』로 한다.

第60條중『1,000萬원이 하』를『2,000
萬원이 하』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通常使用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에 權利設定된 登錄商
標의 通常使用權은 이 法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商標의 使用權으로
본다.

法律第3897號

不正競爭防止法 改正法律案

不正競爭防止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不正競爭防止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부정한 수단
에 의한 商業上의 競爭을 방지하
여 건전한 商去來의 秩序를 유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不正競爭行爲』라 함은 그目的
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말한다.

1. 國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商號·商標·商品의 容

器・包裝 기타 他人의 商品임을 표시한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他人의 商品과 混同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國내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商號・標章 기타 他人의 營業임을 표시하는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他人의 營業上의 施設 또는 活動과 混同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方법으로 거래상의 書類 또는 通信에 허위의 原產地의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를 한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原產地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方법으로 거래상의 書類 또는 通信에 그商品이 生產・製造 또는 加工된 地域 이외의 곳에서 生產 또는 加工된듯이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를 한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5. 他人의商品을 詐稱하거나 商品 또는 그 廣告에 商品의 品質・내용・製造方法・用途 또는 數量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宣傳 또는 標識를 하거나 이러한 方법이나 標識로써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第3條 (國旗・國章등의 사용금지)

① 工業所有權의 보호를 위한 파리協約(이하『파리條約』이라 한다)當事國의 國旗・國章 기타의 徽章이나 國際機構의 標識와 동일 또

는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國家 또는 國際機構의 許諾를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條約當事國의 政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當該國의 政府의 許諾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不正競爭行爲의 中止請求등)

① 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上의 利益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法院에 그 행위의 中止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上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法院에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

③ 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上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第2項의 规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한 경우 損害賠償에 대신하여 또는 損害賠償과 함께 營業上의 信用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5條 (不正競爭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이 法에 의한 不正競爭行爲의 방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不正競爭審議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違反行爲의 是正勸告) 特許廳長은 第2條의 规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 또는 第3條의 规定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30日內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標識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是正에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第7條 (意見聽取) 特許廳長은 第6條의 规定에 의한 是正勸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当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的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8條 (外國人에 대한 適用의 예외) 外國人으로서 파리條約當事國 안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의 者는 第4條의 规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의 中止請求등을 할 수 없다.

第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商法等 商號에 관한 规定 또는 刑法中 國旗・國章에 관한 规定에 第2條 내지 第4條 및 第11條의 规定과 다른 规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第10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1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條의 规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한 者

2. 第3條의 规定에 위반한 者

第12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1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11條의 规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이 法은 198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法律第3889號

特許管理特別會計法案

第1條 (目的) 이 법은 特許行政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特許管理特別會計(이하『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歲入으로써 그 歲出에 충당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會計의 管理) 會計는 特許廳長이 管理한다.

第3條 (歲入과 歲出) 會計는 特許行政關聯收入, 前年度移越金,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會 및 一時借入金을 歲入으로 하고, 特許行政關聯經費, 一時借入金의 償還金 및 利子를 歲出로 한다.

第4條 (一時借入) ① 會計에 속하는 經費를 支給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會計의 부담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의 歲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第5條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 會計의 收入으로써 이 會計에 속하는 經費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不足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으로 충당할 수 있다.

第6條 (豫備費) 會計는豫測할 수 없는豫算의 支出과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第7條 (超過收入金의 직접사용) ① 特許廳長은 會計의 歲入豫算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超過收入(이하『超過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超過收入金을豫算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超過收入에 직접 관련된 人件費 기타 經費에 사용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收入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調書를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經濟企劃院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를 審查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特許廳長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財務部長官과 監查院長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第8條 (剩餘金의 처리) 會計는 每會計年度에 있어서 歲入·歲出의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年度 歲入에 移入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特許廳에 속하는 財產·債權 및 債務는 이 會計가 承繼한다. <略>

工所權 用語 11個 審議 確定

86年度 第4次 工業所有權 用語審議會서

- ◎…… 工業所有權 用語 醇化 審議委員會는 지난 구립 9日 大韓辨理士會 會議室에서……◎
- ◎…… 86年度 第4次 委員會를 개최하고 11個 用語를 審議確定했다. 審議·確定된 語……◎
- ◎…… 用는 다음과 같다. ………………◎

순화대상용어	구분	심의확정어	순화대상용어	구분	심의확정어
개공(開孔)	×	트인구멍	장설(裝設)	→	목적한대로 상형을 갖추도록 설치하는것
쇄차(鎖車)	○	스프로켓회일, 사슬바퀴	절출(折出)	×	접다, 접어내다
안전변(安全辨)	×	안전판(安全辦) 안전밸브	정변(頂邊)	×	윗모서리
우산차(傘齒車)	○	우산톱니바퀴	축수(軸受)	×	축받이, 베어링
유삽(遊插)	×	힐겹게 끼움	폐입(閉込)	×	메움
장설(張設)	→	팽팽하게 설치하는 것			

(주) × : 심의확정어만 사용한다. → : 뜻만 확정시킨것. ○ : 대상용어와 심의확정어 다같이 사용한다.